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체휴무가 있는 당직은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수당(30,000원)을 지급하고,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대하여 당직수당을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차등지급

## 3. 의안전문 : 불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당직근무자</u> <u>에게 당직수당은 1인 1회당</u> <u>30,000원을 지급한다.</u></p>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당직근무자</u> <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u> <u>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을 지</u> <u>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u> <u>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u> <u>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u> <u>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한</u> <u>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u> <u>을 지급한다.</u></p>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 ①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

<개선내용>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